

##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및 유의 사항

'22. 2. 25.(금), NFEC

### □ 주요 규정 위반 사례

-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사용용도\*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\*\*의 비용을 일반 연구시설·장비비가 아닌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로 잘못 계상하는 사례 (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 제1항 및 제105조 제1항 관련)
  - \* 유지보수, 임차계약 연장, 이전설치
  - \*\* 연구장비 신규 구축비, 연구장비 업그레이드비, 신규 연구장비 임차비 등
-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계상한도인 수정직접비의 10%를 초과하여 계상하는 사례(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제2항 위반)
- 당해연도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차년도 이후의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전문기관과의 협약 변경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 (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제2항 위반)
  - \*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 0원 처리, 신규 반영, 증액, 감액 등
-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적립기한\*을 초과하여 적립하거나 적립을 누락하는 사례(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4조 제1항 위반)
  - \*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급일로부터 90일('22년 1월 전까지는 지급일로부터 30일) 이내 (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)
- 정산 시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 이체 또는 계정대체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사례(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4조 제2항 관련)
-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와 상이하게 연구비관리시스템에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 금액을 작성·등록하는 사례
- 미지정기관이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를 계상하여 협약한 경우(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 제1항 위반)
- 미지정기관이 협약 시에는 일반 연구시설·장비비로 계상한 후, 전문기관 연구비관리시스템에는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로 오작성하여 등록한 경우

□ 제도 주요 내용 및 유의 사항

○ 제도 주요 내용

- (도입 배경) 기존에는 연구과제 수행기간 내에서만 연구장비를 유지·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과제 공백기에 장비 유지·관리가 어려운 실정
- (도입 목적) 연구과제 단위로 관리·사용하던 연구시설·장비비를 연구책임자,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,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R&D 주요 자원인 연구장비의 운영 지속성 제고

기존에는(As-is)	앞으로는(To-be)
■ 과제 기간 중 해당 연구시설장비만 유지보수 가능	■ 과제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유지보수 가능

- (법적 근거)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(연구시설·장비비 사용의 특례)

○ 제도 유의 사항

- (적합한 용도 계상 여부 확인) 연구시설·장비비 중, 3가지 용도(유지·보수, 임차계약 연장, 이전·설치)에 해당하는 비용만 통합관리비(특례)로 계상
  - ※ 기타 용도(장비 신규 구축, 업그레이드, 신규 임차 등)는 일반 연구시설·장비비로 계상
- (계상 한도 준수 여부 확인) 연차별로 수정직접비\*의 10% 이내로 계상
  - \*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

<참고 : 과제 수행 단계별 유의사항>

